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714호

「주택법」 제51조제1항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1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업화주택 인정

1. 인정업체 및 대표자 : (주)성지제강 (대표자 김정순)
2. 공장 소재지 : (17407)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129-1외 12필지
3. 공업화주택 명칭 : Sungji steel standard modular (공동주택)
4. 주요 구성 재료 : 철골조, 메탈스터드, 석고보드, 알루미늄복합패널
5. 사용부위 : 골조, 바닥판, 벽체, 천장
6. 주택용도 : 공동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 나목 “연립주택” 공동주택에 한함)
7. 주택규모 : 공동주택(4층 이하 연립주택)
8. 구조형식 : 철골구조
9. 유효기간 : 2024년 12월 13일 부터 2029년 12월 12일 까지
10. 주의사항
 - Sungji steel standard modular의 인정범위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나목의 “공동주택(연립주택)”에 한정하고 (주)성지제강에서 제시한 설계도서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
 - 공업화주택 (공동주택) 건설시 에너지절감을 위한 냉·난방설비, 전기, 배관 및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하여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설하여야 함

- 내화구조인정서,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성능인정서, 차음구조 인정서 등의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,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을 적용하여야 함
- 본 세부인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신청자가 제출한 최종 신청서에 따름